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50923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10. 31.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181,656원 및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8,3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7.9%, 5,903,821원에 대하여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6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일부합의해제계약을 22,181,6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2,18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2020. 2.경부터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23. 3. 9. 기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합계 채무액은 별지 표와 같다. 1)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로 2017. 12. 6.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으나 2020. 3. 16.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 위 지분을 다시 이전받아 2021. 5. 11. 피고 D에게 증여한 후 다음 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023. 3. 9.까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의 합계 22,181,656원(= 2,988,666원 + 19,192,990원,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과 그 중 8,3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7.9%, 5,903,821원(= 1,906,674원 + 3,997,147원)에 대하여는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경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연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 C은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수 억 원의 퇴직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현금이나 예금은 모두 소비가 용이한 것들로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가족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 소홀하였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까지 연체하였던 사실로 보건대 그 퇴직금을 이미 탕진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피고 B가 이 사건 해제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을 D가 선의로 전득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22,181,656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해제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2,181,6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2,18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 B가 위와 같이 가정에 소홀하고 불성실한 생활을 하므로 이 사건 해제계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해제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유일한 재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및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재성

별지

1) 연체이율은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하여 그 구체적 이율은 위 표와 같다.